

[일련번호 : 51]

양 천 구

주 의 요 구

제 목 건설공사대장 확인 및 감독 소홀

관 련 기 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과

내 용

1. 업무개요

○○과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공사 계약 및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관계 규정 및 판단 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르면 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건설공사대장에 적어야 하고, 기재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도급금액이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시행령 제26조 제3항에 따라 건설사업자는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 기재해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통보한 도급금액이 1억원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되거나 제2항에 따라 통보한 하도급금액이 4천만원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

같은 법 제81조에는 법 제22조제6항을 위반하여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99조에서는 법 제22조제6항에 따른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해당 공사 완료일까지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 제81조에 따른 시정명령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의 ‘건설공사 발주자의 현장점검·조치요령’에 따르면 발주자는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 통보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업자의 건설공사정보 통보기한 준수여부 및 기재사항의 정확성 여부, 법령 위반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잘못 기재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정요구를, 적정한 경우에는 ‘확인’란에 클릭 조치하고, 법령 위반이 발생한 경우에는 건설업자의 등록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과는 아래 표와 같이 건설업체가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으로 통보한 사항에 대하여 감사일 현재까지 확인하지 않았으며, 업체가 건설공사대장을 통보하지 않았음에도 관련 법령 위반여부를 적기에 확인하지 않는 등 통보의 적정성 검증 및 후속 조치 업무 등 건설공사대장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 건설공사 관리대장 확인 소홀 내역

연번	계약일	공사명	최초 확인 여부	최초 통보일	비고
				최초 확인일	
1	2024.04.30.	목동중앙본로 104~공향대로 610 외 1개소 사각형거 보수공사	X	2024.5.29.	- 최초 통보포함 모두 발주자 미확인(4건) - 2024.11.28. 준공처리
				-	
2	2024.05.23.	오목로 47~월정로 66 외 2개소 사각형거 보수공사	X	2024.5.31.	- 최초 통보포함 모두 발주자 미확인(5건) - 2024.12.27. 준공처리
				-	
3	2022.12.19.	목동2빛물펌프장 토출관로 보강공사	X	-	-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	

4.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 의견

○○과는 위 사항과 관련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5. 조치할 사항

○○과장은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을 실시하기 바라며, 건설공사대장 관리·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관리·감독하시기 바랍니다. (주의)